

성별에 따른 성희롱 심각성인식의 차이: 피해경험에 의한 피해자비난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노성훈**, 정진성***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인식이 상이한 이유를 찾고자 했다. 특히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이후 심각성인식에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는데, 인식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성희롱 대응책 마련에 꼭 필요한 요소로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정체성이론을 토대로 피해경험에 의한 피해자비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에 고용된 1,15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성희롱을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피해자비난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비난이 성희롱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경험에 의해 조절되었고, 마지막으로 성별 → 피해자비난 → 심각성인식으로 이어지는 매개 경로도 피해경험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라는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이 개인에게 부여될 때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사회정체성이 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사회정체성의 역동적인 발현으로서 개인의 자존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향후 성희롱 대응책은 특정 집단을 막연히 탓하기보다는 피해자와 같은 다양한 집단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19.12.31.4.329>

❖ 주제어 : 성희롱, 사회정체성이론, 성별 차이, 피해자비난, 피해경험, 성희롱 심각성인식, 조절된 매개효과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책임저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I. 서론

최근 성폭력¹⁾ 피해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피해사실 못지않게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2019년 9월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판단의 핵심은 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중시해야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안에서 피해자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공포, 수치심, 불안감, 무력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된다. 특히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가 보여준 모습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정형화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했다고 반박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종종 성폭력이 상호 호감에 의한 합리적 성관계로 둔갑하는 현상에 경종을 울리고 성인지 감수성 차원의 재해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처럼 개인마다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개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성별이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는 강간처럼 심각한 범죄보다는 성희롱과 같이 상대적으로 행위의 비난가능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범죄에 있어서 더욱 뚜렷하다. 예를 들면,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더 광범위한 유형의 행위를 성희롱에 포함시키는 경향을 밝혀냈고, 또한 성희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관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정인 외, 2001; Bitton & Shaul, 2013; O’Leary-Kelly et al. 2009; Osman, 2007).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별로 없지만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기

1) 성폭력은 성폭행(형법상 강간), 성추행(형법상 강제추행), 성희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장응혁·김상훈, 2018)

2)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미묘한 사안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더 쉽게 성희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Gutek & Koss, 1993).

그러다면 성희롱에 대한 이러한 성별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쉽게 유추해볼 수 있는 원인은 우리 사회의 성 차별적 인식·문화·구조로 인해 형성되고 고착화된 성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성 고정관념은 ‘여성다움’, ‘남성다움’에 대한 성 편향적 인식을 만들어 성희롱을 처신이 부적절한 여성들의 책임으로 보거나, 일부 예민한 여성들의 과민반응 썸으로 치부하게 된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양성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성희롱을 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더 광범위한 유형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Foulis & McCabe, 1997; McCabe & Hardman, 2005; Russell & Trigg, 2004). 즉, 남성중심 문화에 길들여져 성 차별 고정관념을 내재화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성희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이나 성 역할에 대한 편향성이 존재하는 방식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차원에까지 확장된다. 모든 개인은 자신만의 성 인식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의 인식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자 Henri Tajfel(1957, 1959)의 ‘사회정체성이론’에 의하면 전자는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 후자는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에 해당된다. 인간은 사회집단을 자신만의 기준에 의해서 구분한 후 스스로를 특정 집단에 귀속시키고 그 집단과 자신을 동질적으로 생각하는 심리가 있다. 이러한 ‘사회정체화(social identification)’ 또는 ‘자기범주화(self-categorization)’ 과정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의 사회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³⁾ 여러 집단적 특성들 가운데 성별은 사회정체성 형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근거기준으로 작용한다(김금미·안상수, 2008).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는 바로 이렇게 형성된 사회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원인에 해당하는 성 차별 고정관념 역시 사회정체성의 발현이라 해석할 수 있다.

3) 엄밀히 말하면 자기범주화는 사회정체화를 보완한 개념으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되듯, 두 개념 모두 탈개인화(depersionalizing)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혼용되어도 무방하다.

그런데, 모든 남성이 성희롱 심각성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성별 집단 내의 차이는 개인적 특성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성희롱 피해경험을 들 수 있다. 국외의 여러 선행연구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희롱을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Foulis & McCabe, 1997; Gowan & Zimmerman, 1996; Konrad & Gutek, 1986). 남성이라 하더라도 스스로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다른 남성들에 비해 성희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사회정체성이론은 이러한 성별 내의 차별적 인식, 즉 피해경험으로 인한 심각성 인식의 차이도 잘 설명할 수 있다.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집단이 형성되는데, 이때 피해를 당한 개인은 스스로를 피해자 집단에 귀속시키고 그 집단과는 동질성을, 가해자 집단과는 이질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자기범주화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는 기존의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사회정체성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라는 새로운 사회정체성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희롱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남녀 차이는 분명해 보인다. 그 원인은 남성이 차별적인 성 고정관념을 더 많이 수용하여 되레 피해자를 비난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정체성이론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의 성 정체성은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개인정체성), 스스로 범주화한 집단, 대표적으로 성별 집단의 일반적 인식을 공유하는 경향(사회정체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별 집단 내에서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성희롱 피해경험이다. 다수의 국외 연구에 따르면, 성별을 불문하고 성희롱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역시 사회정체성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즉 같은 남성일지라도 피해를 겪으면 피해자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의 성별에 따른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도식 안에서 성별 인식 차이를 설명해 왔다(문희경, 2009; 양돈규·김정인, 2016). 그로 인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사회정체성들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희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분법적 접근은 자칫 모든 문제의 근원을 성별 그 자체로 귀결시키는 환원주의(reductionism)적 견해를 보여 효과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오히려 소모적인 상대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최근 극단적인 상대결로 인해 남혐·여혐이라는 사회분열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 ‘혐오공화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여 보복적 성범죄를 부추길 우려도 존재한다(김정희,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별과 성희롱 피해경험이 성희롱 심각성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지금까지 성희롱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회정체성이론을 적용하여, 성별이라는 사회정체성이 피해자비난을 통해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매개효과)을 과연 피해자라는 사회정체성이 조절(조절효과)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과제라 하겠다(그림 1 참고). 성별과 성희롱 피해경험이 상호작용을 통해 심각성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연구질문은 단순히 인식의 차원을 넘어 실제 발생의 원인을 탐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정체성은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 행위로도 발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II. 이론 및 문헌 고찰

1. 이론적 근거

가. 성희롱 설명모형

성희롱 연구의 이론적 토대로서 대표적인 네 가지 모형이 주로 적용되어왔다. 생물학적 모형(Berscheid & Walster, 1969; Winch, 1971), 사회문화적 모형(Farley, 1978; MacKinnon, 1979), 조직적 모형(Farley, 1978; MacKinnon, 1979; Martin, 1978), 개인차 모형(Jensen & Gutek, 1982)이 그것인데, 이들은 성희롱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성에 비해 빈번한 남성의 성희롱 행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생물학적 모형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남녀 간 끌림을

성희롱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좀 더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사회문화적 모형은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사회문화적으로 정의된 권력의 차이를 성희롱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의 남성이 더 많은 성희롱을 범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조직적 모형은 조직 내 권력과 지위의 불평등이 성희롱의 원인이라는 설명으로서, 사회문화적 모형과 유사하게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더 많은 성희롱을 저지른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개인차 모형은 각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한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예, 성희롱 통념, 성역할 태도)가 성희롱의 원인이라는 설명으로서, 주로 남성에게서 그릇된 성희롱 통념과 보수적·차별적인 성역할 태도 등이 많이 표출되기 때문에 성희롱 가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윤정숙·박미숙, 2016: 59-63).

그런데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성희롱 심각성인식으로서, 개인차 모형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인식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평가된다. 비록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특성, 즉 개인정체성에 주목한 이론이지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사회정체성을 받아들여 집단적인 성 인식을 공유한다는 추론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피해경험으로 인해 피해자로서의 또 다른 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성별 정체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별, 가·피해자 집단은 물론 계층, 직업, 종교, 지역, 인종 등 다양한 집단적 정체성을 수용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우선순위를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들 일반의 모습에 특화된 이론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성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은 성별 관계에 관하여 개인적 차이로 보는 관점과 남성과 여성의 집단 간 관계로 보는 관점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정진경(1990)의 연구는 개인차로서 남성이나 여성의 전형이 되는 성격특성과 인지반응을 측정하고, 이것이 여성성, 남성성 혹은 양성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나 이후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반면, 김금미(2001)는 개인차의 관점을 취하면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집단 간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성별 사회정체성으로 인한 집합적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간주하고, 남녀관계를 인종 연구에서와 같이 집단 간 상호작용의 틀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김금미·안

상수, 2008: 134). 이러한 집단적 관점은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소속감을 갖고 그 집단의 지위향상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집합적 행위를 설명하는데 꼭 필요하다(김금미·한덕웅,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 간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사회정체성이론을 대안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나.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사회정체성이론은 ‘자기(self)’가 ‘개인정체성’과 ‘사회정체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제한다. Tajfel(1978: 63)은 개인정체성을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사회집단(들) 혹은 범주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사회정체성은 ‘자신이 사회집단(들)의 성원이라는 인식과 그 집단의 성원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 및 정서적 의미로부터 파생되는 자기 개념의 일부’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전형적인 성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를 특정 성 집단으로 범주화하고 그 집단적 인식·행동을 따르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회정체성의 발현에 해당한다(한덕웅, 1995: 50-51). 주지하듯, 우리는 대부분 사회화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성별이나 가·피해자 집단뿐만 아니라 인종, 계층, 직업, 종교, 지역 등 다양한 집단에 속하게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집단에의 소속감을 통해 공통의 가치와 정서를 자연스럽게 내재화하는데, 상황에 따라 특정 집단에의 소속감이 차별적으로 각성됨을 경험하고 있다. 예컨대,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사회정체성은 다양하게 공존한다. 아울러 상류층의 흑인 여성은 계층과 인종, 성별이라는 사회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이들 정체성이 때로는 서로 대립하기도 함을 잘 알고 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 집단행동 및 갈등에 관한 사회심리학 이론을 가다듬는데 일생을 바친 Tajfel(1957, 1959; Tajfel & Wilkes, 1963)은 사회정체성이론을 개발하여 고정관념, 차별, 유대, 순응, 집단규범과 같은 집단적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정체화(social identification)’ 개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Tajfel의 주장은 사회심리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Turner와 동료들(Turner, 1985; Turner et al., 1987)은 사회정체화 과정을 보완하여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을 제안했다. 결국 사회정체화와 자기범주화는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인식, 감정, 행동을

탈개인화(depersonalizing)하여 집단의 전형에 맞추어 가는지를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Hogg & Grieve, 1999: 80).⁴⁾

현재 사회정체성이론은 집단 간 관계를 설명하는 일반이론으로 자리 잡았고, 성별 관계 역시 이 이론에 의해 잘 다뤄질 수 있다. 성별은 개인을 양분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남녀로 구분될 때 지위와 권력의 차이, 고정관념의 차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인종집단 간 관계를 연구할 때처럼 성 관련 문제 역시 개인 차원이 아닌 집단 차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김금미·한덕웅, 2001: 15-16). 실제로 김금미는 동료들과 함께 사회정체성이론을 기반으로 남녀의 성별정체성과 경쟁전략, 양성평등 추구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등을 연구하였다(김금미·안상수, 2008; 김금미·한덕웅, 2001; 김금미·한영석, 2002; 김금미 외, 2003).

개인은 여러 형태의 집단에 속해 있는 만큼 다양한 사회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정체성은 개인의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월한 집단에 정체화된 경우 높은 자존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열등한 집단에 정체화된 경우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자아와 집단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며, 가능하면 우월한 집단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런데 소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3가지 전략을 이용하게 된다. 1) 내집단(ingroup)이 우월한 집단이 되도록 외집단(outgroup)과 경쟁하거나 2) 현재 내집단의 열등한 특성을 재해석하여 더 이상 열등하게 보지 않으려 하거나 3) 사회적 행동과 새로운 이데올로기 분화를 통해 독특한 가치를 지닌 집단적 특성을 창조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처럼 사회정체성은 다양하고 유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김금미·한영석, 2002: 3).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회정체성이론은 본 연구의 관심사인 남녀 간 차별적인 성 인식과 태도, 성희롱 문제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 틀이라 할 수 있다. 성별 집단 내에도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집단 간 차별이나 고정관념, 유대, 순응, 집단규범과 같은 집단적 현상은 개인차로만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남성에게서 차별적 성 정체성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남성으로서의 우월감을 느껴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경우 전형적인 남성적 사고를 공유하는 정체화(i.e., 자기범주화)가

4) 사회정체이론은 유럽식 사회인지이론, 자기범주화이론은 미국식 사회인지이론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Farr, 1996; Hogg & Grieve, 1999: 80).

발생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인 “성희롱 피해를 당한 남성이 피해자비난을 삼가고 심각성인식을 공유한다면, 왜 그럴까”에 대한 대답도 가능해보인다. 즉, 피해경험을 통해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각성하게 되면 남성으로서의 성 차별적 사회정체성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 정체성은 성희롱이 심각한 문제이고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되며 성인지 감수성의 함양 또는 양성평등이 매우 중요함을 공유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성별을 떠나 피해자 집단의 부정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2. 성별, 피해자비난, 성희롱 심각성인식

성희롱은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여타 성폭력 못지않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 결과(2016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미경험자들에 비해 두통, 복통, 호흡곤란, 불안장애, 전신피로, 수면장애 등 더 많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들은 60세까지 근무하리라는 믿음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6개월 내 실직할지 모른다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되었다(송민수, 2018: 68-79). 아울러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 빈도와 반복성, 지속성이 강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희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이영란 외, 2013), 오히려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모호한 처신을 비난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김정인 외, 2001).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성희롱을 덜 심각하게 여기는 성향이 강하며(김정인 외, 2001), 성희롱을 덜 심각하게 여길수록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양돈규·김정인, 2016).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 문화로 인해 양성평등의식이 결여되고 여성을 차별하는 고정관념이 ‘정체화(identification)’ 되어 성희롱이 발생한다는 연구(문희경, 2009)도 존재하는데, 이는 최근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희롱을 친근감의 표현이나 직장생활의

활력소짐으로 여기고 오히려 피해자의 과잉반응이 더 문제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김정인 외, 2006).

이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남성의 성 차별 고정관념이 강하며 여성에 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성향이 큰 바, 이러한 성향 때문에 성희롱을 덜 심각하게 간주하고, 더 많은 성희롱을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성희롱 가해자일수록 피해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심각성인식은 저조하여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실제 성희롱 문제발생에서 남녀 간 성차는 분명해 보인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성별 → 피해자비난 → 성희롱 심각성인식으로 이어지는 매개적 인과관계는 이들 연구결과의 일부로서 매우 상식적임과 동시에 국외 연구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Bitton & Shaul, 2013; O'Leary-Kelly et al. 2009; Osman, 2007; Foulis & McCabe, 1997; McCabe & Hardman, 2005; Russell & Trigg, 2004.)

3. 성희롱 피해경험과 심각성인식

성희롱 피해경험이 성희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가정 역시 상당히 보편적이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많은 국외 연구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Foulis & McCabe, 1997; Gowan & Zimmerman, 1996; Konrad & Gutek, 1986).

그런데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흔하지 않다. 특히 성별이 피해자비난을 매개로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피해경험이 조절하는지 여부를 검증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다. 남성으로서의 사회정체성과 피해자로서의 사회정체성이 공존할 때 과연 남성 정체성이 약해지고 피해자 정체성이 우세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는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별 성 정체성이 성별 차별적 인식을 잘 설명하지만, 여기에서 논의가 멈출 경우 자칫 성 문제의 근본 원인을 성별 자체로 치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정체성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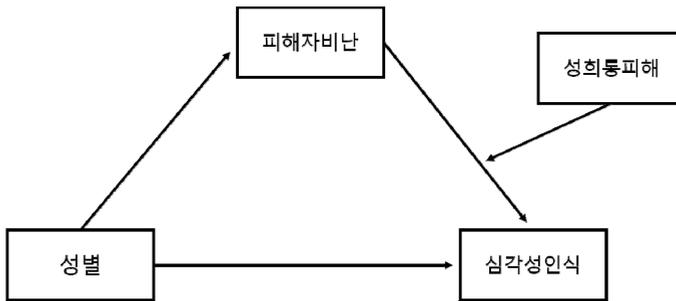
실제 성희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남성들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예컨대, 2016년 실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결과, 전국 직장인 1,150명 가운데 51.9%의 여성과 35%의 남성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윤정숙·박미숙,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장인 근무환경 설문조사」(2016)에 따르면, 15개 산업분야 근로자 3,000명 가운데 여성의 34.4%, 남성의 25%가 지난 6개월 간 주 1회 이상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서상희, 2017: 282).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성희롱이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별 정체성에 국한된 설명은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성별, 가·피해자 집단, 계층, 직업 등 다양한 사회정체성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마련의 지름길일 것이다.

4. 연구모형

이상의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성희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비난 정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성희롱을 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피해자비난이 성희롱의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성별이 피해자 비난을 매개로 하여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성희롱피해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남성일수록 성희롱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을 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만 스스로가 성희롱 피해자가 되어 본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영향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심각성인식을 종속변수, 성별을 독립변수, 피해자비난을 매개변수로, 성희롱피해를 조절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한 뒤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남성이 여성보다 성희롱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다(매개효과).
- 가설 2: 성별을 불문하고 성희롱 피해경험은 피해자비난이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조절효과).
- 가설 3: 성희롱 피해경험은 성별이 피해자비난을 매개로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조절된 매개효과).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설문조사자료이다. 조사모집단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포함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이고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할당표집방법으로 추출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응답자가 설문조사를 위해 마련된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유효표본수는 150개 공공기관과 1,000개 민간사업체에 고용된 자 1,150명이었다(윤정숙·박미숙, 2016:128-130). 본 연구에서는 1,150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변인	항목	n	%
성별	여성	698	60,7
	남성	452	39,3
연령	20대	280	24,3
	30대	480	41,7
	40대	284	24,7
	50대 이상	106	9,2
학력	고졸 이하	122	10,6
	대학(재학, 졸업)	893	77,7
	대학원재학 이상	135	11,7
결혼상태	미혼	538	46,8
	기혼(이혼, 사별)	612	53,2
소득	200만원 미만	247	21,5
	200~300만원 미만	328	28,5
	300~400만원 미만	215	18,7
	400~500만원 미만	183	15,9
	500만원 이상	177	15,4
고용형태	정규직	984	85,6
	비정규직	166	14,4
합계		1150	100

2. 변수와 측정

종속변수는 ‘심각성인식’이다. 응답자가 주어진 시나리오 속에 묘사된 성희롱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원 시나리오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남자교사가 여자교사에게 술잔에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장면이다. 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권력관계 존재 유무(상사-부하, 동료-동료), 성희롱행위 유형(신체적, 언어적), 피해자반응 유형(부정적 반응, 무반응)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여 총 8개의 시나리오 유형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아래에는 8가지 유형 중 ‘상사-부하’, ‘언어’, ‘무반응’의 조건으로 구성된 유형을 예시하였다. 각 응답자에게는 4가지 유형의 시나리오가 무작위로 할당되었다(윤정숙박미숙, 2016:132). 응답자들은 할당된 시나리오를 읽고 묘사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전혀 심각하

지 않다’(1점)부터 ‘매우 심각하다’(7점)까지의 항목점수 중 선택하였다(mean=5.26, SD=1.34).

한 초등학교의 교장, 교감이 3학년 담임교사 6명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 학생지도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교장은 참석한 교사 모두에게 술을 따라 주었고 남자교사 3명은 교장에게 담례로 술을 따르고, 여자교사 3명은 술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교감 A씨가 여자교사들에게 “여선생님들, 잔 비웠으니 교장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 드리세요.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제 맛이죠”라며 여교사들에게 술을 따를 것을 재차 권유하였다. 여교사들은 당황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독립변수는 ‘성별’로서 ‘여성’(=1), ‘남성’(=0)으로 코딩하였다. 매개변수는 ‘피해자비난’으로 성희롱이 발생하는데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의미한다. 피해자비난을 나타내는 총 3개의 문항(‘성희롱 사건은 여성들이 성적 농담에 과잉 반응해서 문제가 확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은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성희롱 사건발생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피해자의 책임도 크다’)을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후 값을 합산한 뒤 평균하여 사용하였다(Chronbach α =.839, mean=2.86, SD=1.58).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성희롱피해는 과거 성희롱피해를 당한 경험을 의미한다. 설문지에 제시된 총 11개 유형의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를 단 한 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으면 ‘있음’(=1), 그렇지 않으면 ‘없음’(=0)으로 코딩하였다(<표 3> 참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응답자는 총 36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1.5%였다.

〈표 2〉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량(N=1,150)

	MIN	MAX	Mean	SD
심각성인식	1	7	5.261	1.338
성별	0	1	.607	.489
피해자비난	1	7	2.862	1.583
성희롱피해	0	1	.315	.465

〈표 3〉 성폭력피해 측정항목의 기술적 통계량(N=1,150)

문항	피해경험 있음(%)	피해경험 없음(%)
나의 외모, 옷차림, 몸매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들은 적이 있다	28,9	71,1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포함)을 들은 적이 있다.	23,3	76,7
나에 관한 성적 이야기를 누군가가 퍼뜨린 적이 있다	12,0	88,0
성관계를 강요받거나 회유 받은 적이 있다	11,3	88,7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받은 적이 있다	24,0	76,0
나에게 입맞춤 또는 포옹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으려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14,5	85,5
상대방이 내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려 했던 적이 있다	11,8	88,2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애무를 강요한 적이 있다.	11,4	88,6
상대방이 내가 원치 않는데도 손을 만지거나 잡으려 했던 적이 있다	22,0	78,0
상대방이 나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성인 잡지(각종 이미지) 또는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려 했던 적이 있다.	13,7	86,3
상대방이 내 앞에서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했던 적이 있다	10,9	89,1

3. 분석방법

변수들 간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PSS 18.0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매개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Baron & Kenny(1986)에서 제시한 절차와 방법을 따랐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SPSS Process를 활용한 매크로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했다. Hayes(2013)가 제시한 분석방법 중 Model 14를 활용하였다.

IV. 결과분석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성별은 피해자비난과 부적관계, 심각성인식과 정적관계를 보였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비난 정도가 높으며 성희롱 사건의 심각성은 낮게 평가했다. 피해자비난과 심각성인식은 부적관계를 보여 피해자에 대한 비난정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성희롱 사건이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성희롱피해는 피해자비난과는 부적관계, 심각성인식과는 정적관계를 보였다. 즉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일수록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비난정도가 낮고 성희롱 사건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변수들 간 상관관계분석

	성별	피해자비난	성희롱피해	심각성인식
성별	1			
피해자비난	-.228**	1		
성희롱피해	.545**	-.069*	1	
심각성인식	.204**	-.175**	.152**	1

* $p < .05$, ** $p < .01$

2. 피해자비난의 매개효과

성별이 피해자비난을 매개로 하여 심각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모형1에서 성별은 심각성인식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모형2에서는 성별이 피해자비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분석모형에 모두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인 피해자비난은 심각성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수인 성별도 모형1에 비해서는 영향 정도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한 수준에서 심각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별이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자비난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성희롱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된 결과였다.

〈표 5〉 성별이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해자비난의 매개효과분석

	모형1 DV: 심각성인식			모형2 DV: 피해자비난			모형3 DV: 심각성인식		
	B	SE	t	B	SE	t	B	SE	t
성별	4.94	.77	6.40**	-.318	.035	-9.06**	3.42	.78	4.38**
피해자비난							-4.78	.63	-7.56**

주: 정규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심각성인식은 제곱근 변환, 피해자비난은 로그 변환하였음.

** p < .01

3. 성희롱피해의 조절효과

이어서 두 번째 가설인 피해자비난이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성희롱피해 경험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하였다. 모형1에서는 피해자비난과 성희롱피해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두 변인 모두 심각성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심각성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비난이 심각성인식과 부적관계가 있는데 성희롱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이 관계가 약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모형의 설명력 증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Delta R^2 = .007$, $\Delta F = 8.42$, $**p < .01$). 따라서 피해자비난이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성희롱피해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피해자비난이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희롱피해의 조절효과분석

	모형1			모형2		
	B	SE	t	B	SE	t
상수	29.47	.37	80.05**	29.55	.37	80.14**
피해자비난	-5.25	.61	-8.55**	-5.37	.61	-8.73**
성희롱피해	3.41	.80	4.28**	3.55	.80	4.45**
피해자비난×성희롱피해				3.31	1.28	2.58*
R ²	.080			.085		
△R ²				.005(F=6.64*)		

주: 정규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심각성인식은 제곱근 변환, 피해자비난은 로그 변환하였음.
상호작용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 때문에 평균중심화하여 사용하였음.

* p < .05, ** p < .01

4. 성희롱피해에 의한 피해자비난의 조절된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이 피해자비난을 매개로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성희롱피해에 의해 조절되는지 분석하였다. 성별은 피해자비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모형1), 피해자비난과 성희롱피해 상호작용항은 심각성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2). 따라서 매개변수인 피해자비난이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성희롱피해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성희롱피해에 의한 피해자비난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N=1,150)

	모형1 DV: 피해자비난			모형2 DV: 심각성인식		
	B	SE	t	B	SE	t
상수	.19	.03	7.01**	.28,39	.68	41.44**
성별	-.32	.03	-9.06**	1.90	.94	2.02*
피해자비난				-5.03	.64	-7.90**
성희롱피해				2.48	.95	2.59**
피해자비난×성희롱피해				2.82	1.31	2.16*
R ²	.067			.071		
△R ²				.004(F=4.66*)		

주: 정규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심각성인식은 제곱근 변환, 피해자비난은 로그 변환하였음.
상호작용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 때문에 평균중심화하여 사용하였음.

* p < .05, ** p < .01

이와 같은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활용하여 성별이 피해자비난을 통해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조건효과를 분석하였다. 성희롱피해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모두 95% 신뢰구간 내에서 Boot LLCI와 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비난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간접효과의 크기(effect)가 성희롱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경험한 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8>에서 보듯이 조절된 매개 지표(index of moderated mediation)가 95% 신뢰구간 내에서 Boot LLCI와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이러한 간접효과 크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건데 성별이 피해자비난을 매개로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성희롱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성희롱피해자를 비난하고 이러한 비난하는 마음이 성희롱 사건을 사소하게 여기는 인식을 불러일으키지만 성희롱피해를 한 번이라도 직접 경험한 남성 집단에게서는 이와 같은 영향관계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성별의 심각성인식에 대한 조건적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

성희롱피해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없음	1,883	,327	1,279	2,545
있음	,986	,354	,336	1,743

Index of moderated mediation=-,898(Boot S.E.,415, Boot LLCI=-1,712, Boot ULCI=-,077)

V. 논의 및 결론

성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스스로 범주화한 집단의 일반적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접근(개인정체성)과 집단적 차원의 접근(사회정체성)이 모두 필요하다. 특히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강한 집합적 현상을 보이는 전형적인 예이므로 인종 연구에서와 같이 집단 간 상호작용의 틀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김금미·안상수, 2008). 본 연구는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인식 역시 사회정체성의 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성희롱 연구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사회정체성이론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 계층, 직업, 종교, 지역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이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가급적 자존감 향상을 위해 우월한 사회정체성이 선택적으로 발현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해자·피해자로서의 정체성도 집단적 사회정체성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성별과 가·피해자 정체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성희롱 심각성인식에 집단적으로 발현되는지를 검증해보았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희롱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성희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매개경로가 스스로의 피해경험에 의해 조절되는지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효과 분석 결과, 성별은 피해자비난을 통해 심각성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성별의 심각성인식에 대한 직접효과가 잔존하여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희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데 이 관계는 남성이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둘째, 성희롱 피해경험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피해자비난이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경험에 의해 조절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별 → 피해자비난 → 심각성인식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 역시 피해경험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확인해본 결과,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집단에서 매개경로가 더 약화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인 피해경험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지지된 것으로, 성별 사회정체성과 피해자 사회정체성이 상호작용을 통해 심각성인식의 정도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성희롱을 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심리적 기제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주로 남성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왔다. 성차별적 고정관념 때문에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이러한 행태가 심각성인식을 방해할 것이라는 추론이 어렵지 않지만, 이러한 매개적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별로 없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성

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 역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둘째, 보다 본질적으로 성희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정체화(i.e., 자기 범주화)와 같은 집단 차원의 심리기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내 성희롱 연구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사회정체성이론이 성희롱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효한 이론적 틀임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남성일수록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그로 인해 성희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성희롱 가해자를 차지하는 남성 집단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데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비난의 정도가 성희롱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을 성희롱 피해경험이 조절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바,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를 피해자 집단에 속한다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성희롱 문제 인식에 있어서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체성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남성-여성 그리고 가해자-피해자의 두 가지 사회정체성이 상호 교차하면서 개인의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같은 남성 집단에 속하더라도 성희롱 피해경험의 유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비난 정도 그리고 이로 인한 성희롱 심각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 식의 단순한 이분법적 도식에 남성-피해자, 여성-가해자가 추가되면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과 가·피해자라는 두 가지 사회정체성이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은 주된 가해자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고 왜곡된 성 고정관념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향상되면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변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성별은 하나의 사회정체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정체성에 대한 각성을 촉발시킴으로서 전형적인 성별 성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성희롱 예방교육에 있어서 피해자의 상태와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성별 구분 없이 만연한 성희롱의 실태를 제대로 알리고,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라는 이분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모든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향상, 성인지 감수성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사회정체성은 자존감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막연히 특정 집단을 탓하기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이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 정책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가상의 시나리오는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인식은 일반적인 성희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성별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특정된 상황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상황 등 성별에 따른 참여자의 역할을 보다 다양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심각성 인식 차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희롱 피해경험을 단순히 피해경험 유무로만 측정한 한계가 있다. 성희롱은 피해의 속성과 심각성 수준에 따라서 성적강요, 성적접근, 젠더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유형 별로 피해자의 성희롱 인식과 대응방식이 달라진다(노성훈, 2018; 정진성·노성훈, 2018).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성희롱 피해의 유형과 심각성이 성별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인식 차이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정체성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성희롱 피해경험이 피해자 정체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제하였는데, 사실 이에 대한 확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전술한 두 번째 한계점과 관련하여 피해 유형이나 심각성에 따라 정체성 형성과 발현이 상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피해경험이 실제로 피해자 정체성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만약 피해자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기존의 성 정체성과 상호작용하여 발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계는 아니지만, 향후 성별, 가·피해자뿐만 아니라 계층, 직업 등 다양한 집단적 인식을 공유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회정체성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성희롱 분야에서도 집단적 심리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금미, 2001, 집단의 사회정체성과 지위에 따른 내집단 편애 - 성별집단과 최소집단에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금미 · 안상수, 2008, “남성의 성평등 의식 예언을 위한 모형 통합: 사회정체성 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33~155.
- 김금미 · 한덕웅, 2001, “여성의 성별 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5~38.
- 김금미 · 한영석, 2002, “차별지각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여성의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2): 1~15.
- 김금미 · 한덕웅 · 한영석, 2003, “남성의 성별관계 인식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31~47.
- 김정인 · 손영미 · 김효창, 2006, “성별 및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1(4): 377~397.
- 김정인 · 최상진 · 손영미, 2001, “성희롱문제 지각에서 성차 및 성역할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1~22.
- 김정희, 2018, “미투(Me Too) 사건을 통해 본 사회적 건강에 대한 담론적 고찰: 국내 미투 보도 6개월간의 기록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49: 5~39.
- 노성훈, 2018, “침묵의 이유: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피해 대응방식 결정요인”, 『형사정책연구』 29(2): 173~198.
- 문희경, 2009, 대학생의 성희롱 예방·대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서상희, 2017, “국내 성희롱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국내 주요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2): 281~315.
- 송민수, 2018, “직장 내 성희롱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가?”, 『노동리뷰』 2018년 3월호: 61~80.

- 양돈규 · 김정인, 2016,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 경험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91(2): 73~96.
- 윤정숙 · 박미숙, 2016,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영란 · 김경미 · 최소은, 2013,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 수준 및 영향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40~50.
- 장응혁 · 김상훈, 2018, 젠더폭력의 대응과 이해: 성폭력수사 편, 박영사.
- 정진경, 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 82~91.
- 정진성 · 노성훈, 2018,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방식에 대한 연구”, 『통계연구』 23(4): 68~93.
- 한덕웅, 1995,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II): 집단간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39~84.
-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scheid, E. and E. Walster, 1969, *Interpersonal Attrac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 Bitton, M. S. and D. B. Shaul, 2013, “Perceptions and attitudes to sexual harassment: An examination of sex differences and the sex composition of the harasser-target dyad”,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3: 2136-2145.
- Farley, L., 1978, *Sexual Shakedown: The Sexual Harassment of Women on the Job*, NY: McGraw-Hill.
- Farr, R. M., 1996, *The Roots of Modern Social Psychology: 1872-1954*, Oxford: Blackwell.
- Foulis, D. and M. P. McCabe, 1997, “Sexual harassment: Factors affect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Sex Roles*, 37: 773 - 798.

- Gowan, M. A. and R. A. Zimmerman, 1996, "Impact of ethnicity, gender, and previous experience on juror judgments in sexual harassment cas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 596 - 617.
- Gutek, B. A. and M. P. Koss, 1993, "Changed women and changed organizations: Consequences of and coping with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28-48.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ogg, M. A. and P. Grieve, 199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crisis of confidence in social psychology: A commentary, and some research on uncertainty reduction",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79-93.
- Jensen, I. W. and B. A. Gutek, 1982, "Attributions and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in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38(4): 121-136.
- Konrad, A. M. and B. A. Gutek, 1986, "Impact of work experiences on attitudes toward sexual harass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1: 422 - 438.
- MacKinnon, C., 1979,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 A Case of Sex Discrimin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artin, S. E., 1978, "Sexual politics in the workplace: The international world of policewomen", *Symbolic Interaction*, 1: 55-60.
- McCabe, M. P. and L. Hardman, 2005,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workers to sexual harassment",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 719 - 740.
- Russell, B. L. and K. Y. Trigg, 2004, "Tolerance of sexual harassment: An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ambivalent sexism, social dominance, and gender roles", *Sex Roles*, 50: 565 - 573.
- O'Leary-Kelly, A. M., L. Bowes-Sperry, C. A. Bates, and E. R. Lean, 2009,

- “Sexual harassment at work: A decade (plus) of progress”, *Journal of Management*, 35: 503-536.
- Osman, S. L., 2007, “The continuation of perpetrator behaviors that influence perceptions of sexual harassment”, *Sex Roles*, 56: 63 - 69.
- Tajfel, H., 1957, "Value and the perceptual judgement of magnitude“, *Psychological Review*, 64: 192-204.
- Tajfel, H., 1959, "Quantitative judgement in social percept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50: 16-29.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and A. L. Wilkes, 1963, "Classification and quantitative judgement“, *Psychological Review*, 54: 101-114.
-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 J. Lawler (Ed.), *Advances in Group Processes: Theory and Research (Vol.2)*, pp. 77-122.
- Turner, J. C., M. A. Hogg, P. J. Oakes, S. D. Reicher, and M. S. Wetherell,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Blackwell.
- Winch, R. F., 1971, *The Modern Family*, NY: Holt, Rinehart & Winston.

Gender Difference in Perceived Seriousness of Sexual Harassment: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Victim Blame by Victimization Experience

Roh, Sung-hoon* · Cheong, Jin-seong**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mechanism of gender difference in perceived seriousness of sexual harassment. In particular, it was focused whether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causes meaningful change in perceived seriousness. Discovering the change in perception is likely to be the indispensable condition to come up with effective solutions. To this e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victim blame by victimization experience was tested based on the social identity theory. Data analyses of 1,150 employees i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showed three main results. First, male workers perceived the seriousness of sexual harassment less seriously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did, which was partially mediated by the extent of victim blame. Second, the effect of victim blame on perceived seriousness was moderated by victimization experience. Thir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victim blame by victimization experienc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t indicated that the impact of gender (social) identity on perceived seriousness was languished due to the new social identity of victim. The perception about sexual harassment is the result of dynamic interactions of diverse social identities,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self-esteem of each individual. Thus, the meaningless approach to blame a specific gender group should come to a standstill. Instead, greater efforts should be exerted to understand the sentiment of various groups including victim.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 Key words: Sexual Harassment, Social Identity Theory, Gender Difference, Victim Blame, Victimization Experience, Perceived Seriousness, Moderated Mediating Effect